

인천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0나80090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0나8009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단68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래 담당변호사 황봉환

피고, 피항소인 1. H

2.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김종건

변론종결 2022. 4. 12.

판결선고 2022. 5. 24.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단6873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H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96분의 3 지분, 원고 B, C, D에게 각 396분의 2 지분, 원고 E, F, G에게 각 396분의 9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80. 10. 8. 접수 제188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I은 피고 H에게 같은 등기소 2018. 7. 2. 접수 제205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5행의 “부동산등기에 관한”을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으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들은, 피고 H이 망인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이므로, 피고 H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H은 1980. 10. 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점유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의 단독 소유였다가 피고 H의 단독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망인의 사망 전에 개시된 피고 H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가 공동상속인의 점유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예지희, 판사 김은경, 판사 권비룡